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익명가공정보편)(안)

2016년 ○ 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목차

1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적용 대상

1-1 가이드라인의 의미.....1

1-2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1

2 정의 2

2-1 익명 가공 정보 (법 제2조 제9항 관계)..... 2

2-2 익명 가공 정보 취급 사업자 (법 제2조 제10항 관계) 5

3 익명 가공 정보 취급 사업자 등의 의무..... 6

3-1 익명 가공 정보 취급에 관한 의무에 대한 생각..... 6

3-2 익명 가공 정보의 적절한 가공 (법 제36조 제1항 관계)..... 7

3-2-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삭제.....9

3-2-2 개인 식별 부호 삭제..... 10

3-2-3 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부호 삭제..... 11

3-2-4 특이한 기술 등의 삭제..... 12

3-2-5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성질에 근거한 기타 조치 13

3-3 익명 가공 정보 등의 안전 관리 조치 등 (법 제36조 제2항, 제6항, 제39조 관계..... 15

3-3-1 가공 방법 등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 15

3-3-2 익명 가공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 등..... 17

3-4 익명 가공 정보의 작성 시 공표 (법 제36조 제3항 관계)..... 18

3-5 익명 가공 정보의 제 3자 제공 (법 제36조 제4항, 제37조 관계)..... 20

3-6 식별 행위 금지 (법 제36조 제5항, 제38조 관계)..... 22

【범례】

법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003년 법률 제57호)
정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 정령 제507호)
규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16년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규칙 제○호)
통칙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통칙편) (201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지 제○호)
개정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 수속에서의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 법률 제65호)

1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적용대상

1-1 가이드라인의 의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취급하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자가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를 시행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8조 및 제60조에 근거한 구체적인 지침으로'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통칙편)'(2016년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고지 제○호. 이하 '통칙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정한다.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및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할 때 익명가공정보의 적절한 취급의 확보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지원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가 적절하고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이 정하는 사업자의 의무 중,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특화하여 알기 쉽게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통칙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에 관한 부분의 해석 등은 통칙 가이드라인 참조)

가이드라인에서'해야 하는 것'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기술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한편, '노력하여야 한다''바람직하다' 등으로 기술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그 즉시 위법이라 판단할 것은 아니나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가능한 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칙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1-2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에 상관없이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해 법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법 제76조에 따른 적용 제외의 경우는 법 제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법 제7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법 제4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상세 내용은 통칙 가이드라인 '6-2(적용제외)'를 참고할 것

①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 기관(보도를 업으로 하는 개인 포함)이 보도 목적으로 취급할 경우

② 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저술 목적으로 취급할 경우

③ 대학 기타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이에 속하는 자가 학술 연구 목적으로 취급할 경우

④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부속 활동을 포함)을 목적으로 취급할 경우

⑤ 정치단체가 정치 활동(부속 활동을 포함)을 목적으로 취급할 경우

2 정의

가이드라인은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법 제2조의 정의 규정 중에서 익명가공정보 및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에 대해 규정한 법 제2조 제9항 및 제10항에 관한 것만을 기재한다.

※ 법 제2조 기타 정의에 관해서는 통칙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것

2-1 익명가공정보 (법 제2조 제9항 관계)

> 법 제2조 제9항
>
> 이 법에서 '익명가공정보'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
>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 - 해당 개인 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의 일부를 삭제할 것(해당 일부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타 기술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 - 해당 개인 정보에 포함된 개인 식별 부호의 전부를 삭제할 것(해당 개인 식별 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타 기술 등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익명가공정보'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조치를 취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서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 개인 정보를 복원해서 특정 개인을 재식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기타 정보와 쉽게 대조할 수 있고 그것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서 익명가공정보란'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을 삭제한 정보를 의미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개인 식별 부호가 포함되는'개인정보의 경우에서'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 정보를 가공'이란 해당 개인 정보에 포함된 개인 식별 부호의 전부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치를 취한 후에도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 따라 개인 정보로써 가공을 해야 한다.)

'삭제할 것'에는'해당 일부 기술 등'또는'해당 개인 식별 부호'를'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타 기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한다.'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이란 대체한 기술에서 대체하기 전의 특정 개인을 식별하게 될 기술 등 또는 개인 식별 부호의 내용을 복원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란 정보 객체 또는 복수의 정보를 조합해서 보관한 것 중 사회 통념상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인의 판단 능력 또는 이해력을 갖고 생존하는 구체적인 인물과 정보 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다. 익명가공정보에 요구되는'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의 요건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특정할 수 없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반인 및 일반 사업자의 능력, 수법 등을 기준으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또는 익명 가공정보 취급 사업자가 기존 방법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게 한 것'이란 기존 방법에서는 익명 가공정보에서 익명가공정보 작성 원인 개인정보에 포함된 특정 개인을 식별하게 될 기술 등 또는 개인식별부호의 내용을 특정함으로써 익명가공정보를 개인정보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게 한 것'의 요건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원할 수 없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반인 및 일반 사업자의 능력, 수법 등을 기준으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가 기존 방법으로 복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는 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년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규칙 제○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공할 필요가 있다. 법 제2조 제9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다.(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가공의무에 대해는 3-2(익명가공정보의 적절한 가공)를 참조)

또한 '통계정보'는 여러 사람의 정보에서 공통 요소의 항목을 추출해서 같은 분류 별로 집계하여 얻은 데이터로 집단의 경향 또는 성질 등을 수량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통계정보는 특정 개인과의 대응 관계가 배제된 경우에 한해서는 법에서 규정한'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전(全) 법에서도 규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되어 있어 기존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2 익명 가공 정보 취급 사업자(법 제2조 제10항 관계)

법 제2조 제10항

이 법률에서의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란 익명 가공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로 특정 익명 가공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기타 특정 익명 가공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정령에서 정한 것(제36조 제1항에서 '익명 가공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이라 한다)을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정령 제 6조

법 제2조 제10항의 정령에서는 이에 포함된 익명 가공 정보를 일정 규칙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특정 익명 가공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정보의 집합물로, 목차, 색인 기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란 익명가공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중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이 가지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9호)에서 정하는 독립행정법인 등 및 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호)에서 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익명가공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로 특정 익명의 가공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란 특정 익명가공정보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한 집합물(익명가공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종이 매체의 익명가공정보를 일정 규칙에 따라 정리 및 분류하여 특정 익명가공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목차, 색인, 부호 등을 붙여 다른 사람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도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사업'이란 일정 목적을 가지고 반복 계속하여 수행되는 동종 행위를 말하며, 또한 사회 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영리와 비영리 여부는 상관없다. 또한 법인격이 아닌 권리 능력이 없는 사회단체(임의 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익명 가공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익명 가공 정보 취급 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익명 가공 정보 취급 사업자 등의 의무

3-1 익명 가공 정보 취급에 관한 의무에 대한 생각

법 제4장 제2절은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하는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 및 익명 가공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익명 가공 정보 취급 사업자가 익명 가공 정보를 취급할 때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1)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는 적절한 가공을 해야 한다. (법 제36조 제1항) < 3-2 (익명가공정보의 적절한 가공) 참조 >
(2)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했을 때는 가공 방법 등 정보의 안전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제36조 제2항) < 3-3 (익명가공정보 등 안전관리조치 등) 참조 >
(3)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했을 때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정보의 항목을 공표해야 한다. (법 제36조 제3항) < 3-4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시 공표) 참조 >
(4)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제공할 정보의 항목 및 제공 방법에 대해 공표하고 제공처에 해당 정보가 익명 가공 정보임을 명시해야 한다. (법 제36조 제4항) < 3-5 (익명 가공 정보의 제3자 제공) 참조 >
(5) 익명 가공 정보를 직접 이용할 때는 원래 개인 정보에 관한 본인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다른 정보와 대조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36조 제5항) < 3-6 (식별 행위 금지) 참조 >
(6)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했을 때는 익명 가공 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조치, 불평 처리 등의 조치를 자주적으로 취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36조 제6항) < 3-3 (익명 가공 정보 등의 안전 관리 조치 등) 참조 >

【사업 목적으로 익명가공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처리하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의 준수 의무 등*】
(1) 익명 가공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및 제공 방법에 대해 공표하고, 제공처에 해당 정보가 익명가공정보임을 명시해야 한다.(법 제37조) < 3-5 (익명 가공 정보의 제3자 제공) 참조 >
(2) 익명 가공 정보를 이용할 때는 원래 개인 정보에 관한 본인을 식별하는 목적으로 가공 방법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또는 다른 정보와 대조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38조) < 3-6 (식별 행위 금지) 참조 >
(3) 익명 가공 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리 조치, 불평 처리 등 조치를 자주적으로 취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39조) < 3-3 (익명 가공 정보 등의 안전 관리 조치 등) 참조 >
* 익명가공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익명가공정보 취득사업자에 해당한다. 단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법 제3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3-2 익명 가공 정보의 적절한 가공 (법 제36조 제1항 관계)

법 제36조 (제1항)

1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익명 가공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이하 동일)를 작성할 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고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가공해야 한다.

규칙 제19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에 포함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 할 것.(해당 전부 또는 일부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에 따라 다른 기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2) 개인 정보에 포함된 개인 식별 부호의 전부를 삭제할 것. (해당 개인 식별 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에 따라 다른 기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3) 개인 정보와 해당 개인 정보에 조치를 취해 얻은 정보를 연결하는 부호 (실제로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가 취급하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부호에 한함.)를 삭제할 것. (해당 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 정보와 해당 개인 정보에 조치를 취해 얻은 정보를 연결할 수 없는 부호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4) 특이한 기술 등을 삭제할 것. (해당 특이한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에 따라 다른 기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

(5) 이전 각호의 정한 조치 외, 개인 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과 해당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다른 개인 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과의 차이, 기타 해당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성질을 고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익명가공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1)이하 동일)를 작성할 때 (※2)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규칙 제1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가공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가공할 정보 성질에 따라 규칙 제19조 각 호의 가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익명 가공 정보 취급에 관한 의무(법 제36조 ~ 제9조)는 익명 가공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익명 가공 정보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른바 산재 정보인 익명 가공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지 않는 익명 가공 정보의 취급에 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작성할 때'는 익명가공정보로 취급하기 위해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를 말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안전관리조치의 일환으로 성명 등의 일부 개인정보를 삭제(또는 기타 기술 등으로 대체)한 후 계속해서 개인 정보로 취급할 경우 또는 통계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공할 경우 등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2-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삭제

규칙 제19조(제1호)

(1) 개인 정보에 포함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것. (해당 전부 또는 일부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에 따라 기타 기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에는 일반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이외에 다양한 개인에 관한 기술(記述) 등이 포함된다. 이 기술(記述) 등은 성명처럼 그 정보 하나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주소, 생년월일 등 기술(記述) 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記述) 등을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삭제 또는 기타 기술(記述)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해야 한다.

또한 기타 기술(記述) 등으로 대체할 때는 원래 기술(記述)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정보를 년도 정보로만 바꾸는 것과 같이 원래 기술을 보다 추상적인 기술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상 가공 사례】

사례1)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가공할 경우 하기 1에서 3까지의 조치를 취한다.

① 성명을 삭제한다.

② 주소를 삭제한다. 또는 ○○현 △△시로 대체한다.

③ 생년월일을 삭제한다. 또는 날짜를 삭제하고 연도와 달로 대체한다.

사례 2) 회원 ID,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 정보를 가공할 경우 하기 1, 2의 조치를 취한다.

① 회원 ID, 성명,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② 주소를 삭제한다. 또는 ○○현 △△시로 대체한다.

(※) 임시 ID를 부여할 때는 원래 기술(記述)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명, 주소, 연락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개인의 고유 기술(記述) 등을 가령 해시함수 등을 사용해서 임시 ID를 생성하려 할 때 원래 기술(記述)에 동일한 함수를 단순하게 적용하면 원래 기술(記述)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 원래 기술(記述) (예를 들어 성명+연락처)에 연속적인 임의의 수 등 기타 기술(記述)을 덧붙인 후 해시 함수 등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연속적인 임의의 수 등 기타 기술 등을 덧붙인 후 해시 함수 등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때는 연속적인 임의의 수 등 기술(記述) 등을 통해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도록 제공 사업자별로 조합하는 기술(記述) 등을 변경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 개인 식별 부호 삭제

규칙 제19조 (제2호) (2)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식별부호 전부를 삭제할 것. (해당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에 따라 기타 기술(記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공 대상인 개인정보가 개인식별부호를 포함한 정보일 때 해당 개인식별부호 하나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 또는 기타 기술(記述) 등으로 대체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타 기술 등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원래 기술(記述)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참고> 개인식별부호의 개요

개인 식별 부호란 그 정보 객체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 정령 제507호. 이하 '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식별 부호 정의에 대한 상세는 통칙 가이드라인 2-2 (개인 식별 부호) 참조)

(1) 특정 개인의 신체 일부 특징을 전자계산기 사용을 목적으로 변환한 부호・생체 정보 (DNA, 얼굴, 홍채, 성문, 걷는 모습, 손가락 정맥, 지문 및 장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것 중,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정령 제1조 제1호, 규칙 제2조】

(2) 대상자마다 다르게 하기 위해 노역 이용, 상품 구입 또는 서류에 붙는 부호・ 여권 번호, 기초연금 번호, 면허증 번호, 주민표 코드와 마이넘버(우리 나라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각종 보험증의 번호 등 공공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정령 제1조 제2호 ~ 제8호 규칙 제3조, 제4조】

3-2-3 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부호 삭제

규칙 제19조 (제3호) (3) 개인 정보와 해당 개인 정보에 조치를 취해 얻은 정보를 연결하는 부호 (실제로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가 취급하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부호에 한한다.)를 삭제할 것. (해당 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 정보와 해당 개인 정보에 조치를 취해 얻은 정보를 연결할 수 없는 부호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예를 들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점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분산 관리 등을 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분할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한 후 해당 개인정보에 조치를 취해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와 서로 연결하기 위해 ID 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ID는 개인정보와 해당 개인정보에 조치를 취해 얻은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원래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도 있으므로 가공 대상인 개인정보에서 삭제 또는 기타 부호로 대체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와 해당 개인정보에 조치를 취해 얻은 정보를 연결하는 부호 중 '실제로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취급하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부호'가 여기서 말하는 가공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호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는 시점에 실제로 취급하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도록 이용된 것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분산 관리를 위해 사용된 ID가 있다면 관리용으로 부여된 ID 또는 전화번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기타 부호로 대체할 때는 원래 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지지 아니한 방법이어야 한다.

※ '실제로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가 취급하는 정보'란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하는 시점에 취급되는 정보를 말하며, 지금부터 작성하는 익명 가공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상 가공 사례】

사례 1) 서비스 회원 정보에 관하여 성명 등의 기본 정보와 구매 이력을 분산 관리하고, 이들에게 관리용 ID를 부여함으로써 서로 연결된 경우, 그 관리용 ID를 삭제한다.

사례 2) 위탁처에 개인 정보 일부를 제공할 때 사용하기 위해 관리용 ID를 부여해서 원래 개인 정보와 제공용으로 작성된 정보가 연결된 경우 해당 관리용 ID를 임시 ID (※)로 대체한다.

(※) 임시 ID를 부여할 때 주의할 점은 3-2-1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삭제)의 (※)를 참조할 것.

3-2-4 특이한 기술(記述) 등의 삭제

규칙 제19조 (제4호)

(4) 특이한 기술 등을 삭제할 것. (해당 특이한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아니한 방법에 따라 기타 기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흔치 않은 사실에 관한 기술(記述) 등 또는 다른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기술(記述) 등은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원래 개인정보로 복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특이한 기술(記述) 등은 삭제 또는 기타 기술(記述) 등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한 기술(記述) 등'은 특이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떠한 기술(記述) 등이 특이한지에 대해서는 정보의 성질 등을 고려하고 개별 사례별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타 기술(記述) 등으로 대체할 때는 원래 기술(記述)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이한 기술(記述) 등을 보다 일반적인 기술(記述)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규칙 제19조 제4호에는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사회 통념상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등이 해당한다. 한편 가공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記述) 등과 해당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다른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記述)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의 성질에 관한 것은 규칙 제19조 제5호를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상 가공 사례】

사례 1) 증례수가 매우 적은 병력을 삭제한다.

사례 2) 연령이 '116세'라는 정보를 '90세 이상'으로 대체한다.

3-2-5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성질에 근거한 기타 조치

규칙 제19조 (제5호)

(5) 전(前) 각 호에 있는 조치 외, 개인 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과 해당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다른 개인 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 과의 차이, 기타 해당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성질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는 규칙 제19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조치를 우선 취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해당 개인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가공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과 해당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다른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가공 원(原)이 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성질에 따라서는 규칙 제19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가공한 정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래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기 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별표 1(익명가공정보의 가공에 관한 방법 예)의 방법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가공 대상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성질에 따라 가공 대상 및 가공 정도는 바뀔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가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공 대상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성질도 고

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 이력, 위치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것이 축적됨으로써 개인행동 습관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보 중 해당 정보 하나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축적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원래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상 가공 사례】

사례 1) 이동 이력을 포함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가공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택이나 직장 등의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위치 정보(경도, 위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원래 개인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추정 가능한 소정 범위의 위치 정보를 삭제한다. (항목 삭제 / 기록 삭제 / 셀 삭제)

사례 2) 어느 소매 점포에서의 구매 이력을 포함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가공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소매 점포에서의 구매자가 극히 한정된 상품의 구매 이력을 포함하고 있고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원래 개인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인 상품 정보 (제품 번호, 색상)를 일반적인 상품 카테고리로 대체한다. (일반화)

사례 3) 초등학교 신체검사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가공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한 아동의 신장이 170㎝로 다른 아동과는 차이가 큰 정보를 갖고 있고,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원래 개인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신장이 150cm 이상이라는 정보에 대해 '150㎝ 이상'이라는 정보로 대체한다. (톱코딩)

(별표 1) 익명 가공 정보 가공에 관한 방법 예 (※)

방법 명	해설
항목 삭제 / 기록 삭제 / 셀 삭제	가공 대상인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 포함된 개인 정보 기술 등을 삭제할 것. 예를 들어 연령 데이터를 모든 개인 정보에서 삭제할 것 (항목 삭제), 특정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할 것 (기록 삭제), 또는 특정 개인 연령 데이터를 삭제할 것 (셀 삭제).
일반화	가공 대상인 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을 상위 개념 또는 수치로 대체할 것 또는 수치를 반올림 등을 하여 정리할 것. 예를 들어 구매 이력 데이터에서 '오이'를 '채소'로 대체한다.
톱(보텀)코딩	가공 대상인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 포함된 수치 중에서 특히 크거나 작은 수치는 정리할 것. 예를 들어 연령에 관한 데이터 중 80세 이상의 수치 데이터를 '80세 이상'이라는 데이터로 정리할 것.
미세 집합	가공 대상인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개인 정보를 그룹으로 묶은 후 그룹의 대표적인 기술 등으로 대체할 것.
데이터 교환(스왑)	가공 대상인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개인 정보 상호에 포함되는 기술 등을 (확률적으로) 대체할 것.
노이즈(오차)부가	일정 분포에 따른 연속적인 임의의 다른 수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임의의 수로 대체할 것.
유의 데이터 생성	인공적인 합성 데이터를 작성하여 이를 가공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 포함할 것.

(※) 익명 가공 정보 작성의 일반적인 가공 방법 예를 나열한 것으로, 이 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가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3 익명가공정보 등의 안전 관리 조치 등 (법 제36조 제2항 제6조 제39조 관계)

3-3-1 가공 방법 등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

법 제36조 (제2항)

2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했을 때 그 작성에 사용한 개인정보에서 삭제한 기술 등 및 개인식별부호와 전(前)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가공 방법에 관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들 정보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규칙 제20조

법 제36조 제2항의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공 방법 등 정보 (익명가공정보 작성에 사용한 개인정보에서 삭제한 기술 등 및 개인식별부호와 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한 가공 방법에 관한 정보(그 정보를 사용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하 해당 조에 관하여 동일하다.)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정할 것.

(2) 가공 방법 등 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류를 정비하고 해당 규정류에 따라 가공 방법 등 정보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그 취급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가공 방법 등 정보를 취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한 자가 가공 방법 등 정보 취급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했을 때 가공 방법 등 정보 (그 작성에 사용한 개인정보에서 삭제한 기술 등 및 개인식별부호와 가공 방법에 관한 정보(그 정보를 사용해서 해당 개인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조치 내용은 대상인 가공 방법 등 정보가 유출된 경우의 복원 리스크의 규모를 고려하고, 해당 가공 방법 등 정보의 양, 성질 등에 따른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항목 및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별표 2(가공 방법 등 정보의 안전 관리에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예)를 참고할 것

(※) '기타 정보를 사용해서 해당 개인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것'에는 예를 들어 성명 등을 임시 ID로 대체 했을 때 대체 알고리즘에 사용된 임의의 수 등의 파라미터 또는 성명과 임시 ID의 대응표 등과 같이 가공 방법에 관한 정보는 해당하지만, '연령 데이터를 10살 단위로 묶은 데이터로 대체'와 같이 복원할 수 없는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 2) 가공 방법 등 정보의 안전 관리에서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예

취해야 할 조치	구체적인 예
① 가공 방법 등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규칙 제20조 제1호)	・가공 방법 등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 체제 정비
② 가공 방법 등 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류 정비 및 해당 규정류에 따른	・가공 방법 등 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와 이에 따른 운용

가공 방법 등 정보의 적절한 취급과 가공 방법 등 정보의 취급 상황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치 (규칙 제20조 제2호)	· 종업원 교육 · 가공 방법 등 정보 취급 상황을 확인하는 수단 정비 · 가공 정보 등 정보의 취급 상황 파악, 안전 관리 조치의 평가, 수정 및 개선
③ 가공 방법 등 정보를 취급하는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한 자가 가공 방법 등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규칙 제20조 제3호)	· 가공 방법 등 정보를 취급하는 권한을 갖지 아니한 자의 관람 등 방지 · 기기, 전자매체 등 도난 방지 등 · 전자 매체 등 도난에 의한 유출 등 방지 · 가공 방법 등 정보 삭제, 기기 및 전자매체 등의 파기 · 가공 방법 등 정보 접근 권한 제어 · 가공 방법 등 정보 접근자의 식별과 인증 · 외부로부터의 부정 접근 등 방지 · 정보 시스템 사용에 따른 가공 방법 등 정보 유출 등 방지

3-3-2 익명 가공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 등

법 제36조 (제6항)

6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는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했을 때, 해당 익명 가공 정보의 안전 관리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해당 익명 가공 정보의 작성 기타 취급에 관한 불평 처리 기타 해당 익명 가공 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해당 조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39조

익명 가공 정보 취급 사업자는 익명 가공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익명 가공 정보 취급에 관한 불평 처리 기타 익명 가공 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해당 조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 불평 처리 등 익명가공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하고 해당 조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안전 관리 등의 조치는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하는 개인데이터 안전 관리, 종업원 감독 및 위탁처 감독과 법 제 35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불평 처리에서 요구되는 조치의 예 (※)를 참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성질, 익명가공 정보의 취급 상황, 취급할 익명가공정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익명가공정보에는 식별 행위 금지 의무가 있다.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할 때 이를 취급하는 자가 부적절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익명가공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작성한 익명가공정보에 대해서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익명가공정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내용은 통칙 가이드라인 '3-3-2 (안전 관리 조치), 3-3-3 (종업원 감독), 3-3-4 (위탁처 감독), 3-6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불평 처리에 대해서)'을 참조할 것.

3-4 익명 가공 정보 작성 시의 공표 (법 제36조 제3항 관계)

법 제36조 제3항

3.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는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했을 때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규칙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해당 익명 가공 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해야 한다.

규칙 제21조

1. 법 제36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공표는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인터넷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한다.
2.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가 다른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한 경우는 해당 다른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가 해당 익명 가공 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전제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이 경우 해당 공표를 통해 해당 개인 정보 취급 사업자가 해당 항목을 공표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했을 때 (※1)는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후 지체 없이(※2),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해당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해야 한다.

또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이 동일한 익명가공정보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처음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해서 개인에 관한 항목을 공표할 때 작성 기간 또는 계속된 작성이 예정되어 있음을 명기하는 등 계속적으로 작성될 것임을 확실히 해둠으로써 그 후 작성될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공표는 이전 공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와의 위탁 계약으로 개인데이터를 제공 받아 익명가공 정보를 작성할 경우 등 위탁을 통한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경우에는 위탁한 자가 해당 익명 가공 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 사례】

사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구매 이력' 중 성명을 삭제하고 생년월일의 일반화, 구매 이력의 특이한 수치 등을 삭제하는 등 가공하여 '성별, 생년, 구매 이력'에 관한 익명가공정보로 작성한 경우의 공표 항목은 '성별' '생년' '구매 이력'이다.

(※1) 여기서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했을 때'란 익명 가공 정보로 취급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가공하는 작업이 완료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즉 어디까지나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정보를 삭제하고 또는 분할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등의 가공을 할 경우 또는 개인 정보를 갖고 통계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가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또한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가공하는 중으로 작성 작업이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이 불충분하다 하여 익명가공정보로 취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했을 때'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여기서의 '지체 없이'는 정당하면서도 합리적인 기간이라면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한 직후 공표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적어도 익명가공 정보의 이용 또는 제 3자 제공 전에 익명 가공 정보를 작성했음을 것을 일반인에게 알리는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간은 업종 및 비즈니스 업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3) '공표'란 널리 일반에게 자기 의사를 알리는 것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통칙 가이드라인 '2-11(공표)'을 참조할 것.

3-5 익명 가공 정보 제 3자 제공 (법 제36조 제4항, 제37조 관계)

법 제36조 (제4항)

4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서 정해는 바와 같이 사전에 제 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 방법에 대해 공표하고, 해당 제 3자에게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가 익명 가공 정보임을 명시해야 한다.

법 제37조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 (스스로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동일)를 제 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제 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 방법에 대해 공표하고, 해당 제 3자에게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가 익명가공 정보임을 명시해야 한다.

규칙 제22조

1. 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표는 인터넷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한다.
2. 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명시는 이메일을 송신하는 방법 또는 서면으로 주고받는 방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한다.

규칙 제23조

1. 전(前)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표에 따른다.
2. 전(前)조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명시에 따른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1) 할 때는 제공에 대해 사전에 (※2)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다음의 (1) 및 (2)의 사항을 공표 (※3)하고 동시에 해당 제 3자에게 해당 제공에 관한 정보가 익명 가공 정보임을 이메일 또는 서면 등으로 명시(※4)해야 한다.

또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가공 방법이 동일한 익명가공정보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제 3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처음 익명가공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때 개인에 관한 항목을 공표할 시,

제공 기간 또는 계속적인 제공이 예정되어 있음을 명기하는 등 계속적으로 제공 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그 후 제 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관한 공표는 이전 공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익명가공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는 행위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 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상기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1)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익명 가공 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사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구매 이력' 중 성명을 삭제하고 생년월일의 일반화, 구매이력의 특이한 수치 등을 삭제하는 등 가공하여 '성별, 생년, 구매 이력'에 관한 익명 가공 정보로 작성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의 공표 항목은 '성별''생년''구매 이력'이다.

(2) 익명 가공 정보의 제공 방법

사례 1) 하드 카피를 우편으로 발송

사례 2) 제 3자가 익명 가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버에 업로드

(※1) '제공'이란 익명가공정보를 제 3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익명 가공 정보가 물리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제 3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이용할 권한이 주어 졌다면) '제공'에 해당한다.

(※2) '사전에'라는 기간은 익명 가공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업종 및 비즈니스 업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3) '공표'란 널리 일반인에게 자기 의사를 알리는 것(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통칙 가이드라인 '2-11(공표)'를 참조할 것.

(※4) '명시'란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가공정보임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명시 방법은 규칙 제2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의 성질, 익명가공정보의 취급 상황 등에 따라 이메일을 송신하는 방법 또는 서면으로 주고받는 방법 등 적절한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3-6 식별행위 금지 (법 제36조 제5항, 제38조 관계)

법 제36조 (제5항)

5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고 스스로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할 때는 해당 익명 가공정보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에 관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대조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38조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할 때 해당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에 관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해당 개인 정보에서 삭제된 기술 등 또는 개인 식별 부호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가공 방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대조해서는 아니 된다.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할 경우(※1)에는 해당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원(原)이 된 개인정보의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각각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 직접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를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다른 정보(※2)와 대조하는 것

(2)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익명가공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 수령한 익명 가공 정보의 가공 방법 등 정보를 취득하는 것
- 수령한 익명 가공 정보를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다른 정보(※2)와 대조하는 것

【식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취급 사례】

사례 1) 복수의 익명 가공 정보를 조합해서 통계 정보를 작성하는 것.

사례 2) 익명 가공 정보를 개인과 관계없는 정보 (예: 기상 정보, 교통 정보, 금융 상품 등의 거래 금액)와 함께 경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식별 행위에 해당하는 취급 사례】

사례 1) 보유한 개인 정보와 익명 가공 정보에 대해서 공통된 기술 등을 선별해서 이들을 대조하는 것

사례 2) 직접 작성한 익명 가공 정보를 해당 익명 가공 정보의 작성 원이 된 개인 정보와 대조하는 것

(※1) 익명 가공 정보는 해당 익명 가공 정보의 작성 원이 된 개인 정보의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다른 정보와 대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개인 정보로써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조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2) '다른 정보'에는 제한은 없고 본인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및 익명가공 정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와 대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 또는 방법을 사용해서 대조하는지는 상관없다.